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



2025년 3월 3일 위키문헌에서 내보냄

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

대통령령 제28211호 제정기관: 대통령

시행: 2017.7.26

타법개정: 2017.7.26

조문

- 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정부조직법」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관계장관회 의를 설치하고,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2.25., 2008.2.29., 2013.3.23., 2013.4.5., 2014.11.19.>
- 제2조(설치 및 기능) ① 주요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있게 수립·추진하고, 경제정책과 관련하여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 및 재정지출을수반하는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의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·조정하여 경제의 건실한 성장·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(이하 "회의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05.2.25, 2013.4.5>
 -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 <신설 2013.4.5>

- 경제동향 점검 및 주요 경제정책방향 설정 등 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- 2.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부처의 주요정책 또는 관 련 중장기계획의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
- 3. 재정·금융·세제 등 국민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부처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
- 4. 그 밖에 부처의 장이 제출하는 경제에 관한 안 건 및 보고사항
- 제3조(회의의 개최시기) 회의는 수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3.4.5>

[전문개정 2005.2.25]

- 제4조(의장) ① 회의의 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. <개정 2005.2.25, 2008.2.29, 2013.3.23>
 - ②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, 이를 주재한다.
 - ③ 의장은 <u>제2조</u>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 중 긴급한 안건으로서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 간에 사전 협의가 완료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 <신설 2013.4.5>
 -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에 $\frac{M2}{M2}$ 제2항 각 호의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있다. <신설 2013.4.5>

⑤ 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3.4.5>

• 제5조(구성원 등) ① 삭제 <2005.2.25>

- ②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·교육부장관·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·행정안전부장관·문화체육관광부장관·농림축 산식품부장관·산업통상자원부장관·보건복지부장관·환 경부장관·고용노동부장관·여성가족부장관·국토교통부 장관·해양수산부장관·중소벤처기업부장관·국무조정실 장·금융위원회위원장·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대통 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 성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- ③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 <신설 2001.2.14, 2005.2.25>
-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회의 에 참석하게 하거나, 참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. <신설 2005.2.25>
- **제6조** 삭제 <2005.2.25>
- 제7조(의견청취)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민간전문

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<개정 2005.2.25>

- 제8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② 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 를 대행할 수 있다.
 - ③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3.4.5>
- 제9조(의안제출)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기획재정부에 해당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. <개정 2008.2.29>
- **제10조(간사등**) ① 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 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된다. <개 정 2008.2.29>
 -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.
- **제10조의2(실무조정회의**) ①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실무조정 회의를 둔다. <개정 2005.2.25>

- ②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 <개정 2001.9.12, 2005.2.25>
 - 1. 회의의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실무협의 및 조정 에 관한 사항
 - 2. 혐의안건과 관련하여 회의가 위임한 사항
 - 3. 기타 의장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
- ③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되며, 위원은 협의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3급 국가공무 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. <개정 2001.9.12, 2005.2.25, 2006.6.12, 2008.2.29> [본조신설 2001.2.14]
- **제10조의3(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**) ① 의장은 <u>제10</u> <u>조의2</u>의 규정에 의한 실무조정회의에서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관련부처간에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.
 - ② 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기획재정부 차관이 되고, 구성원은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된다. <개정 2008.2.29> [본조신설 2005.2.25]
- 제11조(운영세칙)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.

부칙

• 부칙 <대통령령 제16405호, 1999.6.16.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부칙 <대통령령 제17126호, 2001.2.14.>
 - ①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- ②(다른 법령의 폐지) 대외경제조정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- **부칙 <대통령령 제17354호**, **2001.9.12.>** (대외경제장 관회의규정)
 - ①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- ② (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의 개정)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.

제10조의2제2항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, 동조제3 항중 "재정경제부 차관보(대외경제정책관련 안건 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)"를 "재 정경제부 차관보"로 한다.

부칙 <대통령령 제18713호, 2005.2.25.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• **부칙 <대통령령 제18736호**, **2005.3.8.>** (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)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내지 ④생략 ⑤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6호중 "사회간접자본시설"을 "사회기반시설"으로 한다.

⑥ 내지 <27>생략

제5조 생략

• **부칙 <대통령령 제18873호**, **2005.6.23.>** (여성가족부 직제)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
제5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및 ②생략

③ 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중 "여성부장관"을 "여성가족부 장관"으로 한다.

- ④ 내지 <35>생략
- **부칙 <대통령령 제19513호**, **2006.6.12.>** (고위공무원 단 인사규정)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내지 ⑥생략

⑦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.

제10조의2제3항중 "1급 내지 3급의 국가공 무원"을 "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"으로 한다. ⑧ 내지 <241>생략

• **부칙 <대통령령 제20720호**, **2008.2.29.>** (기획재정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)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 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

②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정부조직법」 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 관"을 "「정부조직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"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"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 관"을 "기획재정부장관"으로 한다.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·교육과학기술부장관·행정안전부장관·문화관광체육부장관·농림수산식품부장관·지식경제부장관·보건복지가족부장관·환경부장관·노동부장관·여성부장관·국토해양부장관·국무총리실장·금융위원회위원장·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·통상교섭본

부장 및 대통령실경제수석으로 구성한 다.

제9조, 제10조제1항, 제10조의2제3항, 제10 조의3제2항 중 "재정경제부"를 각각 "기획재 정부"로 한다.

- ③부터 <68>까지 생략
- **부칙 <대통령령 제21214호**, **2008.12.31.>** (행정안전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

②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"문화관광체육부장관"을 "문화체육관광부장관"으로 한다.

- ③부터 <175>까지 생략
- **부칙 <대통령령 제22075호**, **2010.3.15.>** (보건복지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)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⑩까지 생략

①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"보건복지가족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, "여성부장관"을 "여성가족부장관"으로 한다.

- ①부터 <187>까지 생략
- 부칙 <대통령령 제22269호, 2010.7.12.> (고용노동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)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

(4)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"노동부장관"을 "고용노동부 장관"으로 한다.

- 15부터 <136>까지 생략
- **부칙 <대통령령 제24441호**, **2013.3.23.>** (기획재정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)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생략

②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

제1조 중 "「정부조직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"을 "「정부조직법」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"으로 한다. 제4조제1항 중 "기획재정부장관"을 "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"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·미래창조과학부장관·교육부장관·안전행정부장관·문화체육관광부장관·농림축산식품부장관·산업통상자원부장관·보건복지부장관·환경부장관·고용노동부장관·여성가족부장관·국토교통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·국무조정실장·금융위원회위원장·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.
- ③부터 <43>까지 생략

부칙 <대통령령 제24496호, 2013.4.5.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항 중 "「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」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의"를 "「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」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"로 한다.

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운영

③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경제정 책조정회의 규정」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 의"를 "「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」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"로 한다.

④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"「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」 제2조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의"를 "「경제 관계장관회의 규정」 제2조에 따른 경제관 계장관회의"로 한다.
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• **부칙 <대통령령 제25751호, 2014.11.19.>** (행정자치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 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 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 행한다.
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 중 "「정부조직법」 제19조제3항"을 "「정부조직법」 제19조제3항 및 제4항"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"미래창조과학부장관·교육부 장관·안전행정부장관"을 "교육부장관·미래창 조과학부장관·행정자치부장관"으로 한다.

- ②부터 <418>까지 생략
- **부칙 <대통령령 제28211호, 2017. 7. 26.>** (행정안전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 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 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 행한다.

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

제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> 제5조제2항 중 "미래창조과학부장관·행정자 치부장관"을 "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·행정 안전부장관"으로, "국무조정실장"을 "중소벤 처기업부장관·국무조정실장"으로 한다.

②부터 <388>까지 생략

연혁

•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(제28211호) (시행 2017.7.26)

-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(제25751호) (시행 2014.11.19)
-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(제24496호) (시행 2013.4.5)
-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(제24441호) (시행 2013.3.23)
-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(제22269호) (시행 2010.7.12)
-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(제22075호) (시행 2010.3.19)
-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(제21214호) (시행 2008.12.31)
-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(제20720호) (시행 2008.2.29)
-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(제19513호) (시행 2006.7.1)
-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(제18873호) (시행 2005.6.23)
-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(제18736호) (시행 2005.3.8)
-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(제18713호) (시행 2005.2.25)
- 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 (제17354호) (시행 2001.9.12)
- 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 (제17126호) (시행 2001.2.14)
- 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 (제16405호) (시행 1999.6.16)

법령체계도

상하위법

- <u>정부조직법</u>
 - 。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

라이선스

이 저작물은 <u>대한민국 저작권법</u> 제7조에 따라 **비보호저작물**로 배포됩니다.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,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.



- 1. 헌법·법률·조약·명령·조례 및 규칙
- 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·공고·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



- 3. 법원의 판결·결정·명령 및 심판이나 행 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 에 의한 의결·결정 등
- 4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 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 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
- 5.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

About this digital edition

This e-book comes from the online library Wikisource^[1]. This multilingual digital library, built by volunteers, is committed to developing a free accessible collection of publications of every kind: novels, poems, magazines, letters...

We distribute our books for free, starting from works not copyrighted or published under a free license. You are free to use our e-books for any purpose (including commercial exploitation), under the terms of the <u>Creative Commons Attribution-ShareAlike 3.0 Unported</u>^[2] license or, at your choice, those of the <u>GNU FDL</u>^[3].

Wikisource is constantly looking for new members. During the realization of this book, it's possible that we made some errors. You can report them at <u>this page [4]</u>.

The following users contributed to this book:

- Sjsws1078
- 뭉게구름
- Great Brightstar
- Rocket000
- BetacommandBot
- Zscout370

- Ksiom
- Fry1989
- Nudimmud
- Supreme Dragon
- Ejnysh
- Illegitimate Barrister
- VulpesVulpes42
- EdwardIII
- Reepy1
- Jwerks26
- Boris23
- KABALINI
- Bromskloss
- Tene~commonswiki
- AzaToth
- Bender235
- PatríciaR

- 1. <u>https://wikisource.org</u>
- 2. 1 https://www.creativecommons.org/licenses/by-sa/3.0
- 3. 1 https://www.gnu.org/copyleft/fdl.html
- 4. 1 https://wikisource.org/wiki/Wikisource:Scriptorium